# 학교생활인권규정



시 용 가 온 중 학 교 2022. 4.

# 1. 학생생활교육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시흥가온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시흥가온중학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정계, 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적용 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 재사항 등) 및 31조(학생의 정계 등), 「경기도 조례」 제4085호(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 [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다.
-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학생의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지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⑤ 학생에게 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 적 장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2 장 학생 생활

**제5조 [포상]** ① 학교장은 다음 포상 내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포상명        | 공적 내용   | 대상    | 시기    | 주관부서  |
|------------|---|-------|-------|-------|
| 모범상        | 인성과 행동, 봉사활동, 교과학급 등 학생생<br>활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모범을 보인 학생 | 1,2학년 | 7,1월  |       |
|            |   | 3학년   | 7,10월 |       |
|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br>적으로 돌본 행적이 뚜렷한 학생         | 1,2학년 | 7,1월  |       |
|            |   | 3학년   | 7,10월 |       |
| 효행상<br>선행상 | 효행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며                              | 1,2학년 | 7,1월  | 안전자치부 |
|            |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지극하여 다른 사<br>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3학년   | 7,10월 |       |
|            | 불우이웃이나 남의 어려운 일을 돕거나 선                              | 1,2학년 | 7,1월  |       |
|            | 행을 통해 아름다움을 실천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이 뚜렷한 학생             | 3학년   | 7,10월 |       |
| 자립상        |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 1,2학년 | 7,1월  |       |
| ^F161'8    | 학생  | 3학년   | 7,10월 |       |

제6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적,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의사표현의 자유】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의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

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 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 【자치활동】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체득하여 민주시민 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 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 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하여 정리 정돈 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다.
- ② 타인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3조 【폭력예방】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 중 한 곳 이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학급 담임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 1588-9128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 1588-7179
- 5. 경찰청 ☎ 117.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 ③ 학교는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제14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이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도박에 관련된 물건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 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 ⑨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 확하여야 한다.
- 제15조【양성평등 및 이성 교제】양성평등 및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념한다.
-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3.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5.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 월 1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하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지도부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 **[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자제한다.
- 제18조 【기타의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제19조 【수업 태도】 ① 수업 시간은 절대 엄수한다.
  - ② 수업 도중 외출을 금하며 부득이할 경우 교과 담임의 허락을 받는다.
  - ③ 수업 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④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미인정 결과 및 조퇴를 하지 않는다.

제20조 [청소 활동] ① 개인별 담당구역을 배정받아 책임 있는 청소 활동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② 청소 시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학생이 참여한다.
- 제21조 [사생활의 자유]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표시한다.
- 제22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당한 수단과 절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다.
- 제23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함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 첫합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25조 [교외 생활] ①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고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화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알린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

동하다.

-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 제2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햇동
- 제27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28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 중하고 보호한다.
  - 3 거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불법 카페,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하다.
- 제29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휴대전화는 등하교 시 휴대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 내 사용을 금한다.
  - 2. 본인 및 타인의 학습분위기 침해 예방과 도난 및 분실 예방 차원에서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만 담임교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보관 조치한다. 단, 가정 사정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3.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줄 수 있다.
- 4. 타인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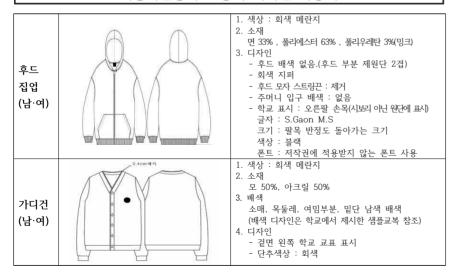
-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6.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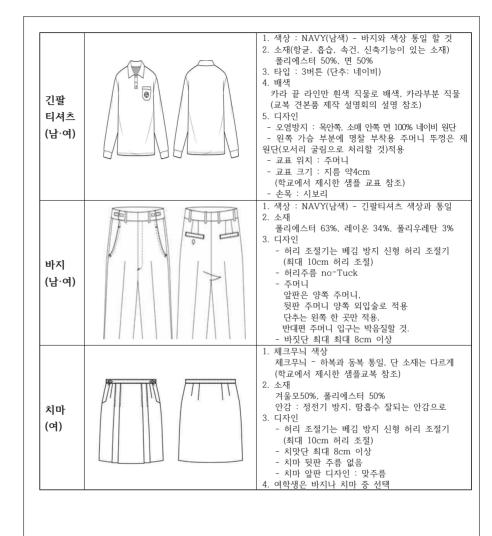
# 제 3 장 용의 · 복장

제30조 [복장] ① 교복은 학교 교복 기준에 맞추어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한다. 동복은 긴팔 티셔츠, 바지, 치마, 후드집업, 가디건이며 동복 생활복 바지를 포함한다. 하복은 반팔 티셔츠, 반바지, 치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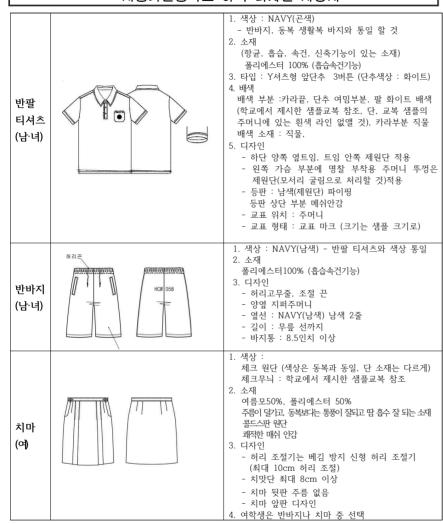
- ②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 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 ④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⑥ 학생 교복 규정은 다음 사양과 같다.

# 시흥가온중학교 동복 디자인 사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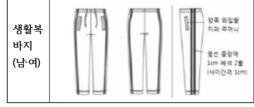




#### 시흥가온중학교 하복 디자인 사양서



### 시흥가온중학교 동복 생활복 바지 디자인 사양서



1. 색상 : 짙은 남색 무지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허리조절끈

- 지퍼 주머니(교복과 동일) - 밑단 : 시보리 없음

- 옆선 : 흰색 2줄

# 시흥가온중학교 교표 사양서

| 도안  | 세부 설명                     |  |  |
|---|---------------------------|--|--|
| SERVED ON MIDDLE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 교복에 교표 제작시 교표의 형태만<br>들어감 |  |  |

제31조 [두발, 화장 등 용모] ①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색조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②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단, 염색이나 펌 등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32조 【신발】 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상의 이유로 등하교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하고,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 제 4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3조【설치】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4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징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 3. 학생 징계 사안 발생에 따른 대처 및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 4.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제35조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인권부장이 되며, 간사는 학년생활지도계, 위 워은 각 학년부장, 보건교사로 구성하다.
- ③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 위원회 대표, 위원회의 업무 총괄
- 2. 부위워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 3. 위원: 학생 징계 사항 심의
- 4. 간사: 위원회 심의 사항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④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징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다.
- ④ 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 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 ⑦ 학생과 보호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 【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장의 직권 소집
- 2. 학생 징계 사안 관련 담당 부장의 요청
- 3.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

제39조 【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 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심의 절차】 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최
- 2. 심의 과정 설명
- 3.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 4.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응답
- 5.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8. 징계 처분 내용 통보

제41조 [정계 내용의 관리 및 통보] ① 학생 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학생 정계 대장에 결정 내용을 기록, 관리하며 위위회 혐의록을 기록하다.

- ②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42조 [결과처리·열람] 위원회 협의록은 나이스로 결재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3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학생 생활 교육 ① (징계 외 생활교육)

- **제44조 [목적]** 정계 외의 생활교육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제45조 【정계 외 학교생활교육의 원칙】 학생 지도 시 언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 [경계 외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업권
  - 2. 학생 지도권
  - 3. 학생 징계 요구권

제47조【장계 외 생활교육의 방법】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 구분  | 단계              | 내용                 | 비고             |  |  |
|-----|-----------------|--------------------|----------------|--|--|
| 1단계 | 약속 단계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 대화를 통한 훈계 및 훈육 |  |  |
| 2단계 | 약속 준수 단계        |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 성찰교실           |  |  |
| 3단계 | 징계 단계 교육적 징계 조치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  |

- ② 약속 단계는 준법정신, 학습 활동, 공중도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시 대화를 통한 훈계 및 훈육을 실시하며 교사와 학생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학생 생활교육 이다.
- ③ 약속 준수 단계는 약속 단계를 통한 학생 생활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을 시 성찰교실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특성에 따라 글 쓰면서 자신의 행동 되돌아보기,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상담하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학교장 또는 교감은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도 교사는 학생 생활교육을 누가 기록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한다.
- 제48조 【성찰교실】① 성찰교실은 1일 1시간 이내,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업 이외의 시 간에 실시한다.
- ② 성참교실 회부 및 참여 기간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 ③ 성찰교실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 협 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다.

### 제 6 장 학생 생활 교육 ② (징계)

제49조 【장계 워칙】 ① 학생 장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징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후육·후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⑦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제50조 【징계 종류】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선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선도)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짓계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5. 징계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1항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1항 규정에 따른 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 제51조【장계 방법】①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위칙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자치부와 학년부의 상담 및 지도를 받는다.
- 4. 자아성찰활동, 상담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이수확인서 및 생활 일기를 담임교사 확인 후 학생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솔한다.
- 6.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7. 공휴일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삽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특별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 등의 교육과정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 별 교육 이수
- 마.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3.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인권부에서 확인 및 지도한다.
- 5.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솔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제52조(징계 기준) 학생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 내 <del>용</del>                              |   | 징계 기준    |             |          |  |
|----|---|---|----------|-------------|----------|--|
|    |   |   | 사회<br>봉사 | 특별교<br>육 이수 | 출석<br>정지 |  |
| 1  |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br>생        | 0 | 0        | 0           | 0        |  |
| 2  |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0 | 0        | 0           | 0        |  |
| 3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0 | 0        | 0           | 0        |  |
| 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0        | 0           | 0        |  |
| 5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0        | 0           | 0        |  |
| 6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0 | 0        | 0           | 0        |  |
| 7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0 | 0        | 0           | 0        |  |
| 8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0 | 0        | 0           |          |  |
| 9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0 | 0        | 0           | 0        |  |
| 10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0 | 0        | 0           | 0        |  |
| 11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0 | 0        | 0           | 0        |  |
| 12 | 교권을 침해한 학생                                  | 0 | 0        | 0           | 0        |  |
| 13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0           | 0        |  |
| 14 |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0        | 0           | 0        |  |
| 15 | 도박을 한 학생                                    | 0 | 0        | 0           |          |  |
| 16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0 | 0        | 0           |          |  |
| 17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0 |          |             |          |  |
| 18 | 흥기를 휴대한 학생                                  | 0 | 0        | 0           | 0        |  |
| 19 | 행위 목격자 및 증언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경우                 | 0 | 0        | 0           | 0        |  |
| 20 | 증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반 사실을 은닉하거나<br>허위로 진술한 경우 | 0 | 0        | 0           | 0        |  |
| 21 |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0 | 0        | 0           | 0        |  |

제53조【심의 절차】①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한다.

- ② 학교장의 결재 다음 날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확정할 수 있다.
- 제54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불복방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55조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함 수 있다.
-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재심 결과는 학교장 결재 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제56조 [조치 이행]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 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정계학생 고사용시】 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8조 【정계 경감】① 학교장은 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부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9조 【장계 해제】① 학생인권부장은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 대상 학생이 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해제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규정은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은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제 7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제61조 [목적] 본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 항제9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2조 [기능] ① 향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시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을 심의한다.
- 제63조 【구성】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 **제64조【구성 방법】①**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 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제6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6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발의할 수 있다.

- 1. 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7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8조【검토 및 의견 수렴】①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9조【심의 및 결정】①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70조 【공포 및 정보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제7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72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생 자치회 규정

#### 제1절 학생자치회 규정

제1조 [명칭] 이 회는 시흥가온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이하 '이 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회는 본교 학생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 함양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회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총학생회 임원회의 개최는 1개월에 1회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총학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되, 회의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기구】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원으로 이루어진 지도위원회,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대의원회(회장, 부회장), 이를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부장, 차장), 그리고 학급회를 두다.

#### 제7조【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 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워 하여야 한다.
-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⑦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학예, 체육, 특기, 그리고 취미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와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⑧ 학생자치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제8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효력정지】이 회의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제 2 절 임 원

제10조 【임원】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각 부의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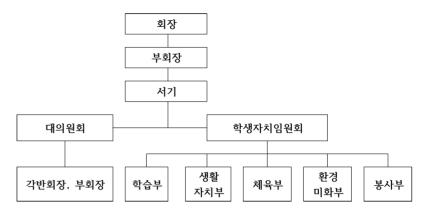
제11조【임원의 의무】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2조 【임원 선출】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평등·비밀·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아 임명된다.

제13조 【임원 임기】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다음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각 부] 학생자치회 조직 및 부서의 편성은 학생자치회와 학급 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직접 결정한다. 조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각 부를 관장함
- 2. 부회장 : 회장을 보조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함(3학년 부회장우선)
- 3. 서기 : 회의록 작성 보관, 회장업무 보조
- 4. 학습부장 : 학습 활동과 학예, 문예 활동과 관련된 행사 지원 사항
- 5. 생활자치부장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의 기획과 홍보 등 각종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 6. 체육부장 : 현장학습, 축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7. 환경미화부장 : 학교 게시판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8. 봉사부장 : 봉사 활동, 캠페인 활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바자회 주최 등

# 제 3 절 선 거

제15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학생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적용】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학생회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 장 1명 (3학년)(단. 2021학년는 3학년 또는 2학년으로 할 수 있다.)
- 2. 부회장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단, 2021학년도는 2학년 또는 1학년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현 학생회 간부 중 부장학생(3학년)으로 선거공고일에 구성한다.

-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선관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2.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당선자 결정에 관한 일
- 5.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 6.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7. 위원회는 의결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선거일 공고】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 일 9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에게 있다.

제20조 【입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다

- 1. 선거공고일 기준 각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2. 언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3. 학교를 사랑하고 우애가 돈독하며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고 성 실한 학생
- ① 정·부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한 조가 되어 입후보 한다.
- ② 선거일 공고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한 조는 학생자치회장은 3학년에,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각각 2, 3학년 1명씩으로 하고, 전체 3명이 된다.

제21조 [투표자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까지 투표자명부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입후보 등록】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생활 교육 규정 저촉 여부 확인 및 서약서 1부
- 3. 공약계획서 1부
- 4.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서 1부
-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무효, 사퇴 및 해임】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즉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임원 활동기간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짓계를 받은 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은 후보자 공고용 벽보 부착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하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 원을 둘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있다.
- ④ 현수막, 명함, 유인물, 설문지 작성, 마이크 사용, 얼굴페인팅 등 기타의 다른 선거수단 사용 행위는 할 수 없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3.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⑥ 선관위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4 매를 지정된 날짜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2절지로 하며 4매 이내로 한다.
- ③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 ⑤ 피켓은 30cm×70cm 크기로 하며 5개 이내로 사용한다.

제26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기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조마다 7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 다.(단, 2021학년도 소견발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견발표를 녹화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7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로 한다. (단, 2021한년도는 코로나19 간염예방을 위해 찬조연설원의 발표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단,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운 동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 식으로 한다. (단. 2021학년도는 모든 학년이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2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하는 학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 임장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년은 각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담임 선생님 임장 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 ④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단, 2021학 년도는 제4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 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 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 관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 학급이나 등교 학급에서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관인 역할을 담임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다.)
- ⑦ 선관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7항의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 ⑧ 선관위원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 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개표】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 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기에 별도의 개표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다 )

- ②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담당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를 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그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2021학년도는 담임선생님이 개표참관인 역할을 대신할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선거 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
- 3. 어느 란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6.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단, 2021학년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29조 【당선인 결정】 ①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조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 표수가 같은 후보조가 2조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후보 조간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 ② 당선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 관리 위원장이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 ③ 당선된 회장이 임기 중에 전학 시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6개월 미만 일 때에는 동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된다.
- ④ 정·부회장 후보자가 단일 후보조일 때에는 찬·반 투표를 해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찬성표가 될 때 당선으로 하고 찬성표가 50%가 되지 않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재선거 및 후보 부재 시 선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다

-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하는 때
- 2.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될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③ 후보자 부재 시 2차 공고를 해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더 받는다. 2차 공고에도 후보

자가 없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대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대의원회에서도 피추천자가 없을 시에는 지도 위원회(학생인권부장, 학년부장, 학년생활지도계, 해당 학년 담임 선생님 등으로 구성)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1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이나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32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교직원회의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의, 결정하되 그 결과를 관계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선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23조 3항과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 【교육】 ①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결과와 그를 기반으로 한 선거록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 받는다.)

#### 제 4 절 대의워회

제35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각 반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
- 3.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토의
- 4. 대외적인 행사의 학교 명예 함양을 위해 사전 토의

제37조 【소집】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달 정해진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절 (학생)운영위원회

제3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9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40조【회의】① 우영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경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학급자치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를 공동체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 및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수】** 각 학급자치회에 회장·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3조 【후보 자격】 각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 언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3. 학교를 사랑하고 우애가 돈독하며 매사에 성실한 학생
- 4.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 제4조 【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 ① 회장·부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직접선거와 결과에 따라 시흥가온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단, 2021학년도 1학기는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전이어서 학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② 학급자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선거 방법은 직접선거로 투표한다.
- 2. 재적 인원과 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당선한다. (단, 후보자 가 1명인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부회장을 별도로 다시 선출한다.)
- 3. 부회장은 후보자 중 차점자로 한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임명한다.
- 제5조【임기】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 1학기로 한다.
- 제6조【교체】 ① 회장·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제 3조 각 호에 저촉되거나 전출,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함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장•부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제4조 각호의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 [학급자치회 회장의 직위]** 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의 의장 및 학생자 치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제8조 [학급자치회 회장의 의무]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 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 제9조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지위와 임무]** 회장을 돕고 학급회의 대의원이 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부서 조직】① 학급자치회 부서는 6개 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학급 실정에 따라 담임, 학생의 협의 하에 부서의 증감, 명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부서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단
  - 2. 총무부
  - 3. 학습부
  - 4. 미화부
  - 5. 화경부
  - 6. 체육행사부
- ③ 주제 및 학급자치회 특성을 고려하여 찬반토론, 공청회, 세미나 등으로 변형하여 운 영해도 무방하다.
- 제11조 [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 대의원회,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혐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장애 학생 인권규정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근거】① 이 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제1 조, 제2장제32조, 제6장제49조에 근거하여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구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 제3조 【차별행위】①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 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제4조 【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5조 [교육]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당해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 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 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괴롭힘 등의 금지】**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가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